



보 도 참 고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일시	2023. 2. 6.(월)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과장	김지연	(044-202-3410)
	아동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배홍석	(044-202-3417)

출생미신고 자녀, 아동수당 지급절차 개선 및 복지연계 추진

- 2023년 아동수당 지급 관련 주요 제도개선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해 미혼부 단체 등의 건의사항과 일반국민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조치로,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 그동안 출생신고 이전에는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① 그러나 현행법상 미혼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이 필요해 유전자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4주가 소요되었다.

☞ 앞으로는 출생신고 전(前)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검사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녀의 생부로서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생모와의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② 생모(生母)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하여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 앞으로는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의사, 조산사 작성 출생증명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이가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서 등

③ 미혼부와 생모의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에는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 아동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그리고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팀’에서 출생신고 지원 및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보호조치도 실시한다.

④ 또한, 아동수당을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현재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를 진행하거나 천재지변의 사유가 있는 때에만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였다.

☞ 앞으로는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 치료(조산 포함)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에도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함

□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 등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아동수당 신청방법: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방문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 이동통신 앱에서도 신청 가능

※ 개정된 아동수당 사업 지침은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누리집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발간자료에서 확인 가능

<붙임> 제도개선 기대 효과(사례)

붙임

제도개선 기대효과 (사례)

- (미혼부 자녀 사례) A씨는 아이의 생모가 출산 직후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전에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한 후에 법원의 명령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친자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법원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 신속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생모의 출생미신고 자녀 사례) B씨는 현재의 남편과 이혼 소송 중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별거하며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법적인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가 등록될 예정이라 출생신고를 지연하며, 이혼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이의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출생증명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를 제출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소급 지원 확대 사례) C씨는 아이를 조산(’23.1.2.)하여 아이가 입원치료 (1.2.~2.28., 58일간)를 받았으며, 본인도 아이의 치료와 퇴원 후 돌봄 등으로 경황이 없어 출생일을 포함해 60일을 넘겨 뒤늦게 아동수당을 신청하였다. 예전에는 소급 지급이 어려웠지만, 다행히 시청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이의 조산, 입원 치료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 신청한 것으로 인정해 주면서 출생한 달인 1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었다.